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생활폐기물 전 과정 통합관리 및 전산 관제 체계
구축 등〉

■ 허종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977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생활폐기물 운반 대상 재활용업자 범위 확대 및 행정구역 명칭 정비	2
(1) 생활폐기물 운반 대상 재활용업자 범위 확대	3
(2) 행정구역 명칭 정비	5
2. 생활폐기물 위탁·공동 처리 체계 정비 및 사후 관리 강화	8
(1) 생활폐기물 수탁 가능 자격 기준 신설	12
(2) 공동주택 등의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 절차 고시 의무화 등	15
(3) 자체 시설 설치 배출자 및 특정 위탁 배출자의 생활폐기물 배출·처리계획 신고 및 보고서 제출 의무화 등	19
3. 생활폐기물 처리정보 전산 입력 의무화 및 통합관계 인프라 구축 ...	24
(1) 생활폐기물 처리정보 전산 입력 의무화 및 위반 시 제재	29
(2) 통합관계 인프라 구축	33

I. 제안경위

2026년 3월 31일 허중식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4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생활폐기물 발생량 저감 및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각종 제도들을 운용해 왔음에도 폐비닐 수거 대란, 폐지 수거 거부 등 생활폐기물 부적정 처리에 따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활폐기물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생활폐기물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생활폐기물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여 생활폐기물의 발생부터 처리까지 이동 경로와 처리 이력을 적시에 관리하고 불법 투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생활폐기물 관리 강화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5조, 안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 신설 등).

III. 검토의견

1. 생활폐기물 운반 대상 재활용업자 범위 확대 및 행정구역 명칭 정비

개정안은 ① 폐기물처리신고자가 수집한 폐지, 고철 등의 생활폐기물을 운반할 수 있는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자 범주에 최종재활용업자를 포함하여 이를 확대하고, ② 관할 구역 내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없는 특별자치도의 행정구역 단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제2호 및 제15조제1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 ③ (생략)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④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25조제5항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
3.·4. (생략)	3.·4. (현행과 같음)
⑤ ~ ⑩ (생략)	⑤ ~ ⑩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 ----- ----- <u>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u> ----- ----- -----.

(1) 생활폐기물 운반 대상 재활용업자 범위 확대 (안 제14조제4항제2호)

현행법 제14조¹⁾에 따라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의 생활폐기물을 직접 처리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되, ②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1)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25조제5항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²⁾ 등에게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③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지, 고철, 폐식용유 등 일부 생활폐기물을 지방자치단체 대행 없이 직접 수집·운반 및 재활용할 수 있고, ④ 이 경우 수집한 생활폐기물은 제품 제조업자, 중간·종합재활용업자³⁾, 다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에게 운반할 수 있음.

이후 ① 중간재활용업자가 폐기물처리신고자로부터 인도받은 생활폐기물을 활용하여 중간가공 폐기물⁴⁾을 만드는 영업을 수행하면, ② 최종재활용업자 또는 종합재활용업자가 해당 중간가공 폐기물을 인도받아 최종 완제품이나 원료 등으로 자원화하는 과정을 수행하며, ③ 이 과정에서 재활용하고 남은 폐기물은 폐기물처분업자⁵⁾에게 위탁하

2) 「폐기물관리법」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2. 폐지, 고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 등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6.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
7.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4)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5)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여 처리됨.

그런데 중간가공폐기물의 발생 공정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수집한 폐지·고철 등 일부 생활폐기물은 중간재활용업자의 분쇄·선별 등의 공정 없이도 최종재활용업자의 원료로 직접 사용될 수 있는 성상을 가졌음에도, 현행법은 운반 대상처를 중간·종합재활용업자로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운반 대상처의 범주에 최종재활용업자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불필요한 중간 거래 단계를 축소하여 자원순환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물류 비용 절감을 통해 재활용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장 여건을 반영한 법률 체계 정비가 필요하므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2) 행정구역 명칭 정비(안 제15조제1항)

현행법 제15조제1항6)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

3.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4.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6) 「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함.

현행법 제15조제1항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등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가격, 분리배출 요일 및 장소, 대형 폐기물 수수료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구체적인 생활폐기물 배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자치 입법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의미함.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서귀포시를 두고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에 불과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의해서만 폐기물 행정이 운영되는 구조적 특성을 지님.

반면, 최근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나 전북특별자치도⁷⁾의 경우 산하에 자치권을 가진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해당 지역에서는 도 조례가 아닌 각 시·군의 조례가 생활폐기물 배출의 직접적인 기준이 됨.

이처럼 특별자치도 간에도 행정 체계가 다원화됨에 따라, 하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없는 특별자치도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보유한 특별

7)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8875호, 2023. 6. 11. 시행)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214호, 2024. 1. 18. 시행)

자치도 간의 자치법규 관할 권한을 명확히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개정안에 규정된 특별자치도 정의 규정⁸⁾은 조문 간 정합성을 위해 현행법 제8조⁹⁾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현행법의 ‘특별자치도지사’는 조문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없는 제주도지사만을 의미¹⁰⁾하기도 하고 강원·전북을 포함한 3개 특별자치도지사 전체를 지칭¹¹⁾하기도 하므로 개정안과 함께 현행법의 ‘특별자치도지사’도 정비할 필요가 있음.

8) 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9)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10)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④ 국가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위탁·공동 처리 체계 정비 및 사후 관리 강화

개정안은 ①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처리를 위탁할 수 있는 수탁자의 자격 기준을 명확히 정의하고, ②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의 위탁 처리 방법·절차를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로 위임하는 한편, 해당 배출자들이 생활폐기물을 공동 처리할 수 있는 공동운영기구 설치 및 대표자 선임 근거를 마련하며, ③ 자체 시설 설치 배출자 및 특정 위탁 배출자의 생활폐기물 배출·처리계획 신고 및 매년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 의무를 규정하고,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38조, 제68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략)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략)
<신설>	②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처리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처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1.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2. 제25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

현행	개정안
<u><신 설></u> <u>② (생 략)</u> <u>③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u>	<u>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허가를 받은 자(생활폐기물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허가받은 자에 한정한다)</u> <u>3.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제14조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자가 운반한 생활폐기물에 한정한다)</u> <u>4.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 한정한다)</u> <u>③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생활폐기물배출자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 해당하는 규모의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 해당하는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u> <u>④ (현행 제2항과 같음)</u> <u>⑤ 제29조제2항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u>

현행	개정안
경우 매년 2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위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④·⑤ (생략) 제38조(보고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승인·신고기관 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외한다)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⑥ 제3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각각의 장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⑦·⑧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38조(보고서 제출) ① ----- ----- ----- ----- ----- ----- -----

현행	개정안
1. (생략) <u><신설></u> 1의2. (생략) 2. ~ 5. (생략) ② ~ ⑤ (생략) 제6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1의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1의3. ~ 11. (생략)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3.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4. 4의2. (생략) <u><신설></u>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15조제5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을 신고한 자 1의3. (현행 제1호의2와 같음)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8조(과태료) ① ----- ----- ----- -----. 1. (현행과 같음) <u><삭제></u> 1의3. ~ 11.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2. (현행과 같음) 3. ----- 제4항----- ----- 4. 4의2. (현행과 같음) 4의3.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생활

현행	개정안
<신설> 4의3. (생략) 5. ~ 14. (생략) ④ (생략)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의4. (생략) 4의5. (현행 제4호의3과 같음) 5. ~ 1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 생활폐기물 수탁 가능 자격 기준 신설(안 제15조제2항)

현행법 제14조¹²⁾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 사업자¹³⁾에게 그 처리

12)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3)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4호는 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필름·시트류를 재활용하거나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포장재를 재활용 또는 소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폐기물처리업자
2. 삭제 <2011. 9. 7.>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5.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전단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로부터 회수·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중 전기·전자제품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회수하는 체계를 갖춘 자
6. 삭제 <2011. 9. 7.>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자(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재활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제품·포장재를 스스로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체계를 갖춘 자(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9.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15조¹⁴⁾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조례에 따른 적정 배출 및 스스로 처리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을 뿐, 배출자가 폐기물을 민간에 위탁할 때 어떠한 자격을 갖춘 업체에게 위탁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수탁 자격 범위를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공동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이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수거망을 거치지 않고 사적 계약을 통해 민간 수거업체에 위탁·처리되는 거래가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음에도,

민간 위탁 시 수탁자의 자격 기준이 법률상 불분명하여 자격 미달 업체나 무허가 수거 업자에 의한 부적정 처리, 환경 오염, 불법 투기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단속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다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4) 「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에서는 분리·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매년 2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위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한 자의 처리실적을 관할구역 내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에 포함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설의 종류 및 설치·관리 기준,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반면, 현행법 제18조¹⁵⁾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①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② 폐기물처리업 허가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법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 해양 배출업 등록자 등 법률에 규정된 적격 수탁자에게만 처리를 위탁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이러한 사업장폐기물 관리 체계와의 형평성, 무분별한 민간 위탁으로 인한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고 관리 체계의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자 및 허가·신고업자 등으로 생활폐기물 수탁 가능 자격을 한정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폐기물협회는 개정안에 동의하면서 현행법 시행규칙¹⁶⁾에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¹⁷⁾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15)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6)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생략)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1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①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탁자의 범위에 건설폐기물처리업자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¹⁸⁾임.

(2) 공동주택 등의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 절차 고시 의무화 등 (안 제15조제3항 및 제6항)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18년 7월 공동주택 재활용품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거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¹⁹⁾ 및 재활용품 민간수거업체가

항을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3.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상의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지 여부

③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해당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에 위치한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비산먼지·침출수·악취를 방지하는 건물 또는 시설

2.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사업장 부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8)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은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위탁 시 수집·운반업자를 거치도록 규정한 안 제15조제2항제3호로 인해 ① 배출자가 실제 폐기물을 최종 처리하는 재활용업자의 수탁처리능력 등 적정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사전확인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② 폐기물의 이동 및 처리 단계의 증가에 따라 유통 경로 추적과 부적정 처리에 대한 행정청의 관리·감독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폐기물재활용업자에 대한 직접 위탁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19)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10.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사업자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

지켜야할 재활용품 수집·운반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한 내부지침인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을 마련하였음.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은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²⁰⁾을 적용 대상으로 삼아 재활용가능자원의 전 품목 일괄 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② 시장 가격의 변동률을 계약 대금에 반영하는 ‘재활용품 가격 연동제’를 도입하며, ③ 매각 계약 내용 및 폐기물 발생·처리량의 지방자치단체 신고 의무와 수거 중단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단계별 대응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2022년 12월 현행법에 제14조의6²¹⁾이 신설되면서, 지방자치

· 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0)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21)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6(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폐지, 고철, 폐합성수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폐기물(이하 이 조에서 “특정 품목”이라 한다)의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을 별도로 대행하게 하는 계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행계약이 체결된 특정 품목 중 일부 품목의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2. 분리배출된 품목을 혼합하여 수집·운반하거나 보관한 경우

3. 처리 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대행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재활용 시장의 변동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단체가 폐지·고철·폐합성수지 등 특정 품목에 대해 별도의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시장 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거나 수익금을 배출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공공 관리 체계가 확립되었음.

이에, 민간 수거 계약 체계만을 전제로 설계되었던 기존의 내부지침은 변화된 법령 체계 및 행정 현장과 부합하지 않아 실질적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는바, 안 제15조제3항을 통해 현재의 법적 환경과 자원 순환 시장의 여건 변화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고시 기준이 정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안 제15조제3항은 고시를 준수해야 하는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제3항²²⁾에 해당하는 규모의 민간임대주택 및 동일한 규모의 공공임대주택²³⁾까지 일괄 포함하여 규정²⁴⁾하고 있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행계약으로부터 얻은 수익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품목의 배출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행계약을 체결(대행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하거나 제3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2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민간임대주택의 관리) ③ 법 제51조제2항에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민간임대주택단지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

2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 ①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영구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4)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은 포함되지 않으므로(법제처 법령해석, 안전번호 21-0529, 2021. 11. 18.)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명시적으로 분리·열거하여 규정한 것으로 판단됨.

음.

이는 주택의 소유 및 공급 형태와 관계없이 일정 규모 이상의 주거 단지 전반에 통일된 위탁 처리 방법과 절차를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다만, 법령 인용 방식의 정합성을 위해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인용 부분을 ‘시행령’에서 ‘법’기준으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아울러, 안 제15조제6항은 해당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특정 규모의 민간임대주택 및 동일한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배출자들이 필요한 경우 생활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도록 공동운영기구를 설치하고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있음.

이를 통해 인접하거나 밀집된 대규모 주거단지별 개별 배출자들이 계약 및 신고 절차를 각각 이행해야 하는 행정적 비효율을 해소하는 한편, 관리주체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일원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자체 시설 설치 배출자 및 특정 위탁 배출자의 생활폐기물
배출·처리계획 신고 및 보고서 제출 의무화 등(안 제15조제5
항, 제38조, 제68조)

개정안은 ①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기 위해 자체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배출자 및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특정 배출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및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자는 제외)에 대하여,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중요 사항 변경 시 변경신고)하도록 하고(안 제15조제5항), ② 해당 신고를 한 자에게 매년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하며(안 제38조), ③ 이러한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68조).

현행법 제15조제3항²⁵⁾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매년 2월말까지 폐기물의 위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반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경우²⁶⁾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처리

25) 「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③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매년 2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위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6) 「폐기물관리법」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②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계획을 배출형태에 따라 ① 일반 다량 배출자는 사업 개시일 또는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② 건설공사 등 5톤 이상 배출자는 폐기물 배출 예정일까지, ③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속히 신고하도록 구체적인 법정 시한을 두어 상시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한편, 대규모 시설 등에서 생활폐기물이 다량 발생하여 사적 시설로 자체 처리하거나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행정관청이 해당 폐기물의 정확한 이동 경로와 물량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란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 폐지, 고철(비철금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왕겨 및 쌀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2.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3.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4. 영 제2조제8호의 건설공사 및 영 제2조제9호의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5.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첨부(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지(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에는 그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라 한다)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사업 개시일 또는 폐기물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
2.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폐기물의 배출 예정일(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을 말한다)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고
3.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사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

이로 인해 부적정 처리가 발생하더라도 사후 추적과 단속에 한계가 존재하므로, 생활폐기물도 사업장폐기물 체계와 마찬가지로 배출 및 처리계획 신고(안 제15조제5항)를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됨.

이와 함께 매년 발생·처리 보고서 제출 의무(안 제38조제1항)를 동시 규정함으로써, 제출된 계획이 실제 현장에서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사후에 연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임.

아울러, 개정안은 현행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신고 의무 위반 시 부과되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²⁷⁾을 삭제하는 한편, 신설되는 배출·처리계획 미신고 행위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8조제3항제4호의3)함.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의무위반 행위와 그에 대한 책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다수의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가 보호법익 침해의 중대성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위반행위의 비난정도에 상응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과태료 금액을 세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편차가 과도하면 제재조항 간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²⁸⁾를 가져올 수 있음.

먼저, 현행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신고는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서²⁹⁾’로서 현행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보고서³⁰⁾와

27)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28)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p.811~812 참조

유사한 성격으로 볼 수 있음.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³¹⁾되는 점을 고려할 때,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은 제재조항 간 형평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개정안이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38조제1항을 통해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발생·처리 보고서 제출 의무를 규정하여 보고서 미제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³²⁾를 적용받도록 한 것은 제재 균형을 도모하는 적절한

29) 「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③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매년 2월 말까지 그해 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위탁 처리 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9(생활폐기물배출자의 신고사항)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한 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 이 조에서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별지 제4호의10서식의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0) 「폐기물관리법」

제38조(보고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승인·신고기관 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 1의2.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한 자
2.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3. 제17조제5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
- 3의2. 삭제 <2017. 4. 18.>
4. 폐기물처리업자
5. 폐기물처리 신고자

31)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제2항제9호의2의 경우는 제외한다)

32) 현행법 제68조제3항제8호 적용

입법조치로 판단됨.

다음으로, 안 제68조제3항제4호의3과 관련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경우 ① 폐기물의 종류·발생량,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 ②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³³⁾하고 있음.

사업장폐기물은 배출량이 막대하고 독성·유해 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생활폐기물보다 환경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큼.

따라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와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과태료 금액을 차등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바, 신설되는 생활폐기물 배출·처리계획 미신고 행위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개정안은 과잉금지원칙 측면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배출 및 처리계획 신고와 실적 보고 의무를 함께 부여하고 제재 규정을 통해 실효성을 담보함으로써, 발생 단계부터 처리까지 체계적인 정보 기반의 종합적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33)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4.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17조제2항, 제25조제11항, 제29조제3항 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3. 생활폐기물 처리정보 전산 입력 의무화 및 통합관계 인프라 구축

개정안은 ① 생활폐기물의 인계·인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기한 내 입력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관한 통합관계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한편(안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45조), ② 해당 전산 입력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조치명령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 제48조, 제68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5조의3(생활폐기물 처리정보 입력 등)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하는 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량값, 위치정보, 처리방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정보(이하 “생활폐기물처리정보”라 한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입력된 생활폐기물의 인계·인

현행	개정안
<신설>	수 내용을 해당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가 확인·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그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과정을 검색·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의4(생활폐기물 통합관제센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생활폐기물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순환경제 목표 설정을 위한 자료 제공 및 정보 지원 3.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 점검 및 적정 처리를 위한 지도 4. 생활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기술개발, 연구활동 및 홍보 5. 제5조의3에 따른 반입협력금의 징수에 관한 기초자료 산정 및 업무 지원

현행	개정안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생략)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1. ~ 2의3. (생략) <신설>	6. 그 밖에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통합관제센터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또는 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통합관제센터는 지역의 특성, 수행하는 업무의 양 등을 고려하여 지부 또는 그 밖의 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1. ~ 2의3. (현행과 같음) 2의4.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폐

현행	개정안
3. ~ 20. (생략) 제45조(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기록(이하 “전산기록”이라 한다)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처리기구(이하 “전산처리기구”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생략) <u><신설></u> <u><신설></u> 2.·3. (생략) ② ~ ⑤ (생략)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	<u>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생활폐기물처리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u> 3. ~ 20. (현행과 같음) 제45조(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 ① ----- ----- -----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입력된 생활폐기물의 인계·인수 및 처리에 관한 내용</u> <u>1의3. 제1호의2에 따른 내용과 생활폐기물처리정보 간의 상호 확인 및 현장 점검</u> 2.·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 ----- ----- ----- -----

현행	개정안
되거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명령대상자”라 한다)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 4. (생략) 5. 부적정처리폐기물과 관련하여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6. ~ 9. (생략) ② ~ ⑥ (생략) 제68조(과태료) ① (생략)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략) 3. (생략)	-----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 -제15조의3제1항 또는 제18조제3항을----- -----생활폐기물처리정보 또는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 ----- 6. ~ 9.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68조(과태료) ①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2. (현행과 같음) 3. (생략)

현행	개정안
4. 4의2. (생략) <u><신설></u> <u><신설></u>	4. 4의2. (현행과 같음) 4의3. (생략) 4의4.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4의3. (생략) 5. ~ 14. (생략) ④ (생략)	4의5. (현행 제4호의3과 같음) 5. ~ 1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 생활폐기물 처리정보 전산 입력 의무화 및 위반 시 제재
(안 제15조의3, 제27조, 제48조, 제68조)

개정안은 ① 생활폐기물의 인계·인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기한 내 입력하도록 의무화하고(안 제15조의3), ② 해당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안 제27조제2항), 조치명령(안 제48조제1항)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안 제68조제3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안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안 제15조의3	생활폐기물 처리정보의 전산 입력 의무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 수집·운반업자 및 처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생활폐기물을 인계·인수하거나 처리하는 경우 그 발생량, 이동 경로, 처리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의무를 부과
안 제27조제2항	민간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신설	폐기물처리업자가 안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생활폐기물처리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 해당 사업자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사유를 신설
안 제48조제1항	위반 배출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대상 확대	기준과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는 등의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안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를 현행법상 ‘조치명령 대상자’에 추가
안 제68조제3항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안 제15조의3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의 인계·인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에 대하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현행법 제18조³⁴⁾에 따라 ①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34)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③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한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폐기물은 기

또는 처분하는 자는 폐기물을 취급할 때마다 인계·인수 사항과 계량 값, 위치 및 영상정보 등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제45조제2항35)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고,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입력된 정보를 해당 처리 주체가 직접 확인·출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처분 등 전 유통 과정을 상시 검색·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이러한 전산 입력 의무의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 현행법은 위반행위의 성격에 따라 다각적인 제재 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먼저 폐기물처리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전산 입력을 누락한 경우에는 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³⁶⁾을 내릴 수 있고, 기준에 맞지 않게 폐기물이 처리되는 등 부적정처리폐기물 발생과 연계되어 전산 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에 대해서

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입력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수집·운반하는 자, 재활용하는 자 또는 처분하는 자가 확인·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수집·운반하는 자, 재활용하는 자 또는 처분하는 자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그 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및 처분 과정을 검색·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5) 「폐기물관리법」

제45조(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전산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36) 「폐기물관리법」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는 행정관청이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 처리방법 변경,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명령³⁷⁾을 할 수 있음.

또한, 인계·인수 내용을 법정 기한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하는 등 절차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³⁸⁾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개정안이 신설하려는 생활폐기물 전산 입력 의무 및 제재 체계는 현행법상 사업장폐기물 규제 체계와 유사한 구조인바, 민간 위탁을 통해 처리되는 다량의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도 실시간 이동 경로를 확인함으로써 부적정 처리를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입법필요성이 인정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처리정보 입력 의무 부여를 통해 폐기물의 이동과 처리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의 실효성 및 신속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므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37) 「폐기물관리법」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명령대상자”라 한다)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8)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의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2) 통합관제 인프라 구축(안 제15조의4, 제45조)

개정안은 ①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되는 생활폐기물 처리정보의 수집, 적정 처리 점검·지도 및 순환경제 목표 설정을 위한 정보 지원 등을 전담하는 생활폐기물 통합관제센터를 한국환경공단에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안 제15조의4), ② 전산처리기구의 관리 대상 범위를 확장하여 입력된 생활폐기물의 인계·인수 및 처리에 관한 내용과 관련 처리정보 간의 상호 확인 및 현장 점검 기록까지 전산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1항).

[생활폐기물 통합관제센터 업무(개정안)]

연번	업무
1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생활폐기물 순환경제 목표 설정을 위한 자료 제공 및 정보 지원
3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 점검 및 적정 처리를 위한 지도
4	생활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기술개발, 연구활동 및 홍보
5	반입협력금의 징수에 관한 기초자료 산정 및 업무 지원
6	그 밖에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현행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4³⁹⁾에 따라 사업장

39)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4(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사업장폐기물의 적정 처리 점검 및 적정 처리를 위한 지도
2.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사업장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계발활동 및 홍보활동
4. 제49조에 따른 대집행 업무 지원

폐기물의 경우 전담 기술지원 조직인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를 통해 전산 입력 장치·설비 점검,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적정성 확인·점검, 행정정보시스템 간 정보 연계·분석·평가 등의 실무 업무를 구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반면, 생활폐기물 분야는 이와 같이 수집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검증·연계하는 전담 인프라와 세부 기능이 미비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 제45조제1항40)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및 전산

5. 그 밖에 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취득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제27조제1항·제2항, 제40조제2항·제3항, 제46조제7항,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사실과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2. 제27조제1항·제2항, 제40조제2항·제3항, 제46조제7항,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그 행정처분에 대하여 결정 또는 판결을 내린 사실 및 그 내용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4(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업무) ① 법 제48조의4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제17조의4 및 별표 5의8 제2호에 따른 확인

2.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입력에 필요한 장치·장비 또는 설비의 확인 및 점검(원격에 의한 방법을 포함한다)

나.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적정 여부 확인 및 점검

3. 제34조의10제5항에 따라 요청받은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

4. 다음 각 목의 시스템에서 관리·제공하는 정보의 연계·분석 및 평가

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나.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5. 사업장폐기물의 적정처리와 관련된 실태 조사 및 제도 연구

40) 「폐기물관리법」

제45조(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기록(이하 “전산기록”이라 한다)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처리기구(이하 “전산처리기구”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6항에 따라 입력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

2. 제18조제3항에 따라 입력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2의2. 제2호에 따른 내용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간의 상호 확인 및 현장 점검

3. 제3항에 따라 입력된 기록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전산처리에 필요한

처리기구가 운영 중이나, 이는 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 정보 및 사업장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의 사후 통계 관리에 국한되어 있음.

개정안이 구축하려는 생활폐기물 통합관제센터 및 전산처리기구의 기능 확대는 현행법상 사업장폐기물의 전담 기술지원 조직인 폐기물 적정처리추진센터 및 관련 전산망 운용 구조와 유사한바, 민간 위탁 방식을 통해 처리되는 다량의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도 전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검증하고 적정 처리를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은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정부의 조직 합리화 및 기능 통합 기조와의 부합성임.

최근 행정부는 인력과 예산의 중복 투입을 방지하기 위해 기능이 유사한 조직의 신설을 지양하고, 기존 유관 전문기관 내의 조직을 확충·재조정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정책 기조⁴¹⁾를 명확히 하고 있음.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은 ‘발생원’에 따라 분류가 나뉘는 뿐,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인계·인수 정보를 추적하고 데이터의 적정성을 검증하여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려는 행정 목적과 기술적 관리 방식은 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41) 세계일보, ‘공공기관 통폐합’ 시사한 이 대통령... 청년 정책만은 “기관·부서 신설 검토하라”, 2026. 4.17.

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전문기관 내에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의 ‘생활폐기물 통합관제센터’를 신설하는 것은 기능적 중복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새로운 독립 조직을 추가로 설치하기보다는 이미 사업장폐기물 분야에서 현장정보 검증 및 실태조사 시스템을 운용 중인 기존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기능과 인력을 확충·재조정하여 생활폐기물 관제 업무까지 통합 수행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직접적인 행정조사 권한 부여의 필요성임.

현행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가 행정청의 처분 정보 등을 통보받아 연계·분석하는 기술지원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것과 달리, 생활폐기물 통합관제센터의 장에게는 관리·감독 대상자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 제출 요구 및 출입·검사 권한⁴²⁾’이 부여되어 있음.

현행법 제39조⁴³⁾는 생활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 등을 포함한 주

4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중식의원 대표발의, 2217977)

제15조의4(생활폐기물 통합관제센터) ② 통합관제센터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또는 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43) 「폐기물관리법」

제39조(보고·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와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나 기관 또는 단체에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나 사업장,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

3.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요 관리·감독 대상자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등이 보고·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소속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출입하여 직접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다른 환경법령의 입법례는 법률상 권한의 주체를 ‘주무부장관 등 행정청’으로 명시한 후,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시행령에 따라 보고·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검사 업무를 한국환경공단⁴⁴⁾에 위탁하는 방식⁴⁴⁾인 반면,

-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5.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6.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 전문기관
 7.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8. ~ 16. (생략)

4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 및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및 검사(위탁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7조(보고와 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제9조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 한정한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 한정한다)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3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고나 자료제출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사업소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공단이나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 13의6.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의 요구 및 검사(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안은 행정청 권한의 위탁이 아닌 생활폐기물 통합관제센터의 장에 대한 법률상 독자적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현행법 제39조에 따른 행정청의 출입·검사 권한과 중복될 소지가 있는 행정조사 권한을 통합관제센터의 장에게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내 통합관제센터 신설을 통해 처리정보의 수집·분석·지원 기능을 전담하게 함으로써, 폐기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48